



제433회 국회 (정기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 고시
의무 규정 등〉

■ 김태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3478호)

2026. 4.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한석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 고시 의무 규정 등 ...	3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안전 인증 신청 등	7

I. 제안경위

2025년 10월 2일 김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5년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계 관련 중대 재해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은 안전인증 대상 기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기계가 사고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이후에야 개별 기계를 추가하는 사후적·단편적 대응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노동자가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업종별·사업장별 특성이 반영된 구체적인 중지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특성, 작업 환경 및 공정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여 받도록 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업종·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작업중지권의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안전인증 제도의 사각

지대를 해소하고, 작업중지권의 실효성을 높여 산업재해 예방과 산업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합니다(안 제24조제2항제4호 및 제52조제 5항 신설, 제84조제3항).

Ⅲ. 검토의견

1. 고용노동부장관의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 고시 의무 규정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사항에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을 추가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 고시 의무 신설하는 내용임(안 제24조 및 제52조).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생략)	제2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u><신설></u>	<u>4. 제52조제5항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기준(업종·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u>

4. (생략) ③ ~ ⑦ (생략)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④ (생략) <u><신설></u>	5. (현행 제4호와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행사 기준(업종·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의 범위나 예시를 열거하지 않고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로 다소 추상적으로 규정하면서 하위 법령에서도 이를 구체화하지 않는데,¹⁾ 이는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을 근로자가 사전에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장이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탄력적으로 작업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를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가 반영된 결과라 볼 수 있음.

다만, 이러한 법률의 취지와 다르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러한 추상적 법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도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 발생 요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음

문 때문에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개별 판례나 중앙노동위원회 판례,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에 의지할 수 밖에 없어 근로자로 하여금 오히려 급박한 상황에서 정당한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정받지 못하여 작업중단으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거나 사업주로부터 작업장 이탈에 대한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부담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업재해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게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 체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작업중지권 행사 실효성 부족을 해결하려는 취지로서, 사업주가 구성·운영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업종·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작업중지 행사기준을 포함시키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업종·사업장별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위험 판단 기준 및 절차를 포함한 작업중지 행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임.

다만, 개정안은 사업주와 고용노동부장관 모두에게 구체적인 작업중지 행사기준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주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해당 사업장에 맞는 보다 구체적인 작업중지 행사 요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여 사전에 사용자-근로자 간 작업중지 행사 요건에 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급박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면, 개증취지에 부합하도록 안 제24조제2항제4호와 제5호와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에 대하여 고용노동부는 현행법령에도 사업주로 하여금 안전보건관리규정에 ‘급박한 위험 시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그 기준을 심의하는 개정안은 작업중지 제도의 현장 작동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나, 정부가 작업중지에 관한 일률적인 표준을 제정·배포하는 개정안은 위험은 사업장마다 상이하여, 정부가 일괄 기준을 설정할 경우 다양한 현장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고, 사업장에서는 정부의 작업중지 표준만을 형식적으로 충족하려는 등 작업중지 판단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약화시키고 제도 활용 측면에서 경직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2.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의 안전인증 신청 등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유해·위험기계등이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내용임(안제84조제3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4조(안전인증) ①·② (생략)	제84조(안전인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③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특성, 사용 환경 또는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④ ~ ⑦ (생략)	<u>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신청하여야 하고,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안전인증을 하여야 한다.</u> ④ ~ ⑦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인증대상기계등”으로 규정하여 이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고,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니더라도 유해·위험기계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그 유해·위험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 등을 평가받으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안전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전인증을 받아야 할 의무가 없는 유해·위험기계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사업장 특성, 사용 환경 또는 작업 공정 등을 고려할 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인증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84조제1항의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같이 안전인증을 받는 것이²⁾

아닌 “신청”이라는 행정절차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청 여부는 사업주의 판단에 따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정안에서의 기계·기구 또는 설비에 안전인증을 신청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한 제재조치³⁾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안전인증 신청 의무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 특성, 기계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기계의 사용단계에서 안전인증을 신청하도록 한 개정안은 유해·위험기계 등의 설계·제조·수입 단계부터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현행 안전인증 제도와 상충되고, 안전인증 대상품이 사업주 판단에 따라 임의로 추가·조정될 수 있어 중요한 유해·위험기계를 안전인증 대상품으로 정하고, 대상품의 안전인증기준 준수 여부, 기술능력·생산체계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관리하는 안전인증 제도 취지와도 맞지 않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제84조(안전인증) ① 유해·위험기계등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을 설치·이전하거나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3) 참고로,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함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4조제1항 후단, 제63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6조, 제81조, 제82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7조제1항, 제118조제3항, 제123조제1항, 제139조제1항 또는 제140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문 의 처
02)6788-5545